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1. 7.14 평창군수(재무과장)
- 나. 회 부 일 자 : 2001. 10. 12
- 다. 상 정 일 자 : 2001. 10. 13 제89회 평창군의회(임시회)제1차 조특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재무과장 김일래)

가. 제안이유

- 현행조례중 일부의 상위법령 불부합 조문을 정리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공공시설 위탁관리시 허가대상·내용등을 규정(안 제5조)
- 은닉재산 신고보상금 지급(안 제6조)
- 군 공유재산 심의내용 규정(안 제7조)
- 관리처분 자구수정(안 제11조)
- 생활보호법 폐지 용어정비(안 제22조)
- 대부료 사용료 요율적용(안 제2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태영)

- 본 조례는 2000.10.20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2001.4.4일 강원도의 표준안을 참고하여 개정안을 만든 것임.

○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 공공시설 위탁시 사용수의 허가가 면제되는 대상범위와 사용료에 관하여 위탁계약시 포함하여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상위법과 부합하게 공무원에게도 성과금을 지급토록 정비하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효율을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변상금 부과에 따른 민원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변상금 청문을 하도록 명문화 하였음.

지방재정법, 하천법, 주민기초 생활보장법, 국유재산법등 관련법의 제·개정에 따른 용어정리 및 자귀수정을 하여 상위법령과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1천만원이하시 공유재산심의를 생략하도록 되어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은?	○ 민원인에게 편리할 것으로 예상됨.
○ 변상금 청문제도에 대하여?	○ 국유재산은 실시하고 있는데 공유재산은 실시하지 않고 있음으로 민원인에게 편익을 주기 위한 것임. 소명기회를 주기 위한 것임.
○ '81.4.30이전 건물에 있는 토지매각시 건물바닥면적 2배 포함면적이 700㎡이하이면 매각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 지금은 200㎡에 대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하였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붙 임 :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부